

2015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15. 9. 18.(금), 14:00~19:00
- ▣ 장 소 :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이현혜, 최성락, 박보현, 강현숙,
김권구, 서동철, 한필원, (이상 7명)
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1	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	공개
2	예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	공개
3	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	공개
4	남한산성 수구문 주변성벽 발굴	공개
5	파주 혜음원지 10차 발굴	공개
6	대전 계족산성 북벽 및 서문지 일원 발굴(시굴)	공개
7	부여 금강사지 1차 발굴(시굴)	공개
8	서산 보원사지 발굴	공개
9	전북 전주 남고산성 동포루지 내 발굴(시굴)	공개
10	전북 익산 객사·관아터 발굴(시굴)	공개
11	대구 부인사지 발굴(시굴)	공개
12	경산 임당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 임당1호분 발굴(시굴)	공개
13	경산 임당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 내 임당토성 발굴(시굴)	공개
14	경주 동부 사적지대 유적 발굴(시굴) 재심의	공개
15	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	공개
16	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(10 공구) 유적 보존방안 심의	공개
17	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	공개

【검토사항】

1	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) 발굴유적 보존방안 검토	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【보고사항】

1	전국 목장성 기초학술조사 실시보고	공개
2	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	공개

I. 심의사항

안건번호 매장2015-10-01

1.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

가. 제안사항

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「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」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부지
- 위치 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-152번지 일원
- 시행자 : 국립축산과학원
- 사업면적 : 1,515,114m²
- 사업내용
 - 현재 천안에 위치한 「성환 가금연구단지」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고, 가금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어 AI(조류인플루엔자) 및 각종 질병에 노출 위험 증가
 - AI(조류인플루엔자) 청정지역인 강원도로 가금연구단지를 이전, 각종 조류 질병에 대비하고 가금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성과 도출

구분	합계(대지포함)	기존 건축물	계사	오리사	기타(초지)
면적(m ²)	1,515,114m ²	10,924.10	3,635.93	2,952.19	1,497,601.78

(2) 조사내용

- 조사기관 : (재)한반도문화재연구원
 - 조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2과장)
- 조사면적 : 1,515,114m²
- 조사기간 : 2015. 8. 18.~2015. 9. 7.
- 조사결과
 - 3개 구역 중 1구역에서 유물 확인, 1구역 동남쪽 구릉 및 곡부에서 조선시대 백자 및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이 확인됨
 - 1구역의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 일대는 해발 800~9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의 입지에는 부적절하지만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유적의 존재유무와 명확한 분포범위, 그리고 유적의 시대 및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회조사(사업구역 내 면적 : 약 118,500m²)가 필요

◆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

연번	유적명	행정구역(주소)	면적(m ²)	시대	조사기관의견	비고
1	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	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-152번지 일원	약 118,500m ²	조선시대	입회조사	
	계	유물산포지 전체면적 : 118,500m ² (입회조사 118,500m ²)				

라. 학술자문회의(2015. 9. 4. / ○○○, ○○○)

- 조사결과 조사구역 대부분이 해발 800~900m에 이르는 고산지대로 사람이 주거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형임
- 조사구역을 3개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구역 동남쪽 곡간부 일대에서 백자 저부편 및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정주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
- 위의 유물 수습상태와 지형 등을 고려한 결과,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회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마. 검토의견

-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

바. 의결사항

- 부결
 - 지표조사 재실시 후 재검토
- 부결 7명 / 출석 7명

2. 예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

가. 제안사항

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는 「예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부지」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예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
- 위치 : 충청남도 예산시 예산읍 관작리 산10번지 일원
- 시행자 : 부여국유림관리소
- 사업면적 : 1,402,288m²
- 사업내용 : 치유의 숲 조성

구분	합계	산림치유지구 (치유센터, 쉼터길, 주차장 등)	물치유지구 (치유장, 지압로 등)	체험활동지구 (숲, 쉼터, 힐링길 등)	치유보전지구 (등산로)	숲지구
면적(m ²)	1,402,288	8,319	1,580	26,602	3,180	1,362,607

(2) 조사내용

- 조사기관 : (재)가경고고학연구소
 -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소장)
- 조사면적 : 1,402,288m²
- 조사기간 : 2015. 7. 7.~2015. 9. 4.
- 조사결과
 - 조사지역은 예산읍 북쪽에 위치하는 산악지대 및 곡부지대에 위치함
 - 조사결과 건물지 및 유물산포지 2개소가 확인되며, 산 정상부의 평탄지는 원지형이 변경되어 유적의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음

- 관작리 건물지와 관작리 유물산포지에는 기단과 축대 등이 잔존하며, 고려~조선시대 유물이 다량 산포하고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함

◆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

연번	유적명	행정구역(주소)	면적 (m ²)	시대	조사기관의견	비고
1	예산 관작리 조선시대 건물지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번지	5,205	조선	발굴조사	
2	예산 관작리 유물산포지1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번지	5,514	고려~조선	시굴조사	
	계	유물산포지 전체면적 : 10,719m ² (시굴 10,719m ²)				

라. 학술자문회의(2015. 9. 1.)

- 참석자 : ○○○, ○○○
- 회의결과
 - 조사지역은 경사도가 급한 편으로 지표조사 결과, 두 곳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됨
 - 유물이 수습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발굴조사가 필요하며, 특히 관작리 건물지에서는 백자편을 비롯한 기와편 등이 석재와 함께 혼재되어 확인된 관계로 발굴조사가 필요함

마. 검토의견

-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

바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검토의견 대로 조치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3. 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

가. 제안사항

한성백제박물관이 추진하는 「서울 석촌동 고분군」(사적 제243호)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제243호 『서울 석촌동 고분군』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, 백제 적석총 관련 유구의 축조양상과 성격 구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한성백제박물관장
- (2) 발굴지역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7길 21
- (3) 발굴면적 : 400㎡(정밀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40일
- (5) 발굴기관 : 한성백제박물관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박물관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박물관 발굴조사팀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4.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성벽 발굴

가. 제안사항

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추진하는 「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성벽」(국가사적 제57호)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성벽 보수정비공사 중 문화재청 기술지도위원회(2015. 4. 14.)에서 수구문을 중심으로 무너진 석축과 기존 도로 가장자리까지 발굴 후 유구확인을 통한 정비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음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 청 인 :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
- (2) 발굴지역 :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-2번지 일원
- (3) 발굴면적 : 225㎡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15일
- (5) 발굴기관 :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
 - 조 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5. 파주 혜음원지 10차 발굴

가. 제안사항

파주시에서 추진하는 「혜음원지 10차」(사적 제464호)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일대에 조성된 외곽담장지의 평면구조와 단면의 형태 등 다양한 축조 양상 파악 및 건물지 및 기타 매장문화재 잔존 유무를 파악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파주시장
- (2) 발굴지역 :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4-1번지
- (3) 발굴면적 : 8,633㎡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44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한백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1팀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조사 허가
- 조건부가결 7명 / 출석 7명

6. 대전 계족산성 북벽 및 서문지 일원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계족산성(사적 제355호)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대전 계족산성」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 범위 등을 확인하여 향후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대전광역시장
- (2) 발굴 대상지역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5번지 일원
- (3) 발굴 대상면적 : 350m²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9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충청문화재연구원
 - 조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
- 1997~2002년까지 충남대학교박물관·백제연구소에서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, 2015년 8월 백제문화재연구원에서 북벽 보축지점과 동문지 집수지 부근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함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(시굴)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7. 부여 금강사지 1차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하는 「금강사지」(사적 제435호) 발굴(시굴)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부여 금강사지」(사적 제435호)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기 사찰에 대한 성격을 구명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
- (2) 발굴지역 :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3-1번지 일원
- (3) 발굴면적 : 29,547m²(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40일
- (5) 발굴기관 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소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소 실장)

라. 참고사항

- 1964·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심사역에 대해 2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(시굴)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8. 서산 보원사지 발굴

가. 제안사항

서산시가 추진하는 「보원사지」(사적 제316호)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서산 보원사지」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역 내 건물지의 분포범위 및 부대시설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서산시장
- (2) 발굴지역 :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일원
- (3) 발굴면적 : 1,794m²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26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백제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
- 2006년~2012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7차례에 걸쳐 중심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, 본 건물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신청한 건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9. 전북 전주 남고산성 동포루지 내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전주시에서 추진하는 「전주 남고산성」(사적 제294호) 발굴(시굴)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전주 남고산성에 대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남고산성(사적 제294호)의 동포루지의 형태와 규모, 축조방법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전주시장
- (2) 발굴 대상지역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28번지 일원
- (3) 발굴 대상면적 : 130㎡(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17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전라문화유산연구원
 - 조사 단 장 및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10. 전북 익산 객사·관아터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익산시에서 추진하는 「객사·관아터」 발굴(시굴)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익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객사·관아터 시굴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보존 방안 및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익산시장
- (2) 발굴 대상지역 :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640-1번지 일원
- (3) 발굴 대상면적 : 2,240m²(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전북문화재연구원
 - 조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 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책임조사원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(시굴)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11. 대구 부인사지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대구시에서 추진하는 「부인사지」(시기념물 제3호) 발굴(시굴)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부인사지 사역 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역의 정확한 범위와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유적의 보존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대구광역시 동구청장
- (2) 발굴지역 :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26번지 일원
- (3) 발굴면적 : 4,563m²(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6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흥익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
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체계적인 시굴조사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조치
- 조건부가결 7명 / 출석 7명

12. 경산 임당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 임당1호분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경산시에서 추진하는 「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」(사적 제516호) 발굴(시굴)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에 위치한 임당1호분에 대한 발굴(시굴) 조사를 통해 향후 봉토의 원형이 심하게 변형된 임당 1호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산시장
- (2) 발굴지역 :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2-1번지 일원(임당1호분)
- (3) 발굴면적 : 1,930m²(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한빛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책임연구원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(시굴)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13. 경산 임당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 내 임당토성 발굴(시굴)

가. 제안사항

경산시에서 추진하는 「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」(사적 제516호) 내 임당토성에 대한 발굴(시굴)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(사적 제516호) 내에 위치한 임당토성에 대한 발굴(시굴)조사를 통해 농로 보수과정에서 단면이 드러나 일부 훼손된 토성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산시장
- (2) 발굴지역 : 경북 경산시 임당동 666번지 일원(임당토성)
- (3) 발굴면적 : 150㎡(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5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한빛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책임연구원)

라. 참고사항

- 동 건물은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발굴(시굴)조사 허가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14. 경주 동부 사적지대 유적 발굴(시굴) 재심의

가. 제안사항

경주에서 추진하는 「동부 사적지대 일원」(사적 제161호) 석교지 복원공사 유적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동 사안은 제1차 매장문화재 소위원회(2015. 8. 14.) 심의 결과 발굴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“현지조사 후 재검토”로 보류되어 현지조사를 실시(2015. 8. 28.)후 재부의 함

다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- 신청인 : 경주시장
- 발굴지역 : 경북 경주시 인왕동 845-4
- 발굴목적: 경주 동부 사적지대 일원에 위치하는 통일신라시대 석교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와 분포범위를 파악하여 복원에 필요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
- 발굴면적 : 1,800㎡(시굴)
-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8일
- 발굴기관 : (재)서라벌문화재연구원
 - 조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유적조사실장)

(2)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(2015.08.28. ○○○, ○○○)

- 인근지역에서 기 발굴조사 시 설정된 방격 방향과 규격에 맞추어 적정한 조사 구역을 설정할 것
- 시굴트렌치 또한 방격 방향에 맞추어 설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

라. 검토의견

-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검토의견 대로 조치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15.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5회(2015. 5. 29./ 7. 1./ 7.16./ 9. 3./ 9. 9.)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)에 따라 평가회의(2015. 5. 29.) 결과에 따른,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

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 청 인 : (주)서울대메디컬허브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/ 발굴(1,310m²)
- (3) 발굴기관 : (재)한강문화재연구원
 - 조 사 단 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부원장)
- (4) 발굴기간 : 2015. 4. 13.~9. 8.(실조사일수 35일)
- (5) 조사결과
 - 대한의원 부속병동(동·서1병동)의 조적조 및 콘크리트 기초 확인

라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5. 29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대한제국 시기 근대병원 설립을 입증하는 유적으로서,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증거임
- 20세기 초 서양식 건축기법과 재료를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음
- 서1병동 건물터와 동1병동 건물터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가 요망됨

마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7. 1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대한제국 시기 대한의원 부속병동 지하 구조물임
- 근대의 국가주도의 근대식 병원과 의학체계의 도입을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

- 발굴유적(서1병동)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, 동1병동 지역의 경우 시굴조사 결과 검토 후 정밀발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
- 발굴유적(서1병동)은 대한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, 이를 유적 보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대한의원 서측에 소멸된 수술실의 존재도 고려한 종합계획이 필요함

바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7. 16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2011년 시행한 동1병동부지의 시굴조사에 대한 검토결과, 다수의 근대유구가 확인되므로 동1병동부지(770㎡)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함
- 발굴결과 확인된 서1병동 하부 기초부분이 열악한 상태이며, 특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음
- 발굴유구에서 건축기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
- 과거의 흔적을 살려서 새로운 건축·조경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

사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9. 3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동1병동에 대한 발굴결과, 대한의원 초축에서 증축 전반에 관한 역사적 시간축이 확인되었으며, 서1병동의 발굴에서 확실치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고증할 수 있었음
- 동1병동 터는 첨단외래센터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, 서1병동 유구의 보존을 검토하되, 첨단외래센터의 코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와 레벨을 조정할 수 있음
- 동1병동 유구 중 건축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서1병동 유구 보존과 관련한 야외 전시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
- 대한의원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한의원 본관과 부속병동을 연결하는 복도 및 약제실 등에 대한 발굴과 정비·복원을 검토하기 바람

아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9. 9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결과 확인된 대한의원 부속병동(동·서1병동) 터는 근대의료 역사와 건축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
- 따라서, 건축 행위(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)로 인해 유구 보존이 어려운 동1병동 터는 가치 있는 유구의 일부분을 보존하되, 서1병동 터는 건축물의 코아에 걸리지 않는 유구는 최대한 보존하여, 근대의료 역사의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바람
- 동1병동 유구 보존범위에 대해서는 근대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, 적절한 보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
- 발굴유적 보존과 관련해서는 단순 유구의 보존을 넘어 야외 역사 소공원으로의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
- 대한의원의 약제실과 부속병동 연결 복도, 서측 날개 건물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(발굴, 정비·복원 등) 수립도 검토하기 바람

자.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5. 29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평가 평점 : 86.44
 - 1907년 대한제국 시기의 병원 건물 유구로서 보존가치가 아주 높음

차. 사업시행자 의견

- 발굴결과 확인된 서1병동 터의 건물기초 윤곽을 바닥 패턴으로 표현하고, 그 중 서1병동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하여 전시함
- 발굴결과 및 서1병동을 비롯한 부속병동의 규모와 변화상을 설명하는 안내판 등 설치

카. 검토의견

- 대한위원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학계 및 여론에 이견이 있으므로, 이를 고려한 보존여부 또는 보존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

타. 의결사항

- 보류
 - 현지조사 후 재검토
- 보류 7명 / 출석 7명

16.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(10 공구) 유적 보존방안 심의

가. 제안사항

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(10 공구)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8. 25.)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결정)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(2015. 8. 25.)하고,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

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한국도로공사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일원 / 발굴(18,084m²)
- (3) 발굴기관 : (재)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책임연구원)
- (4) 발굴기간 : 2014. 11. 10.~2015. 8. 14.
- (5) 조사결과
 - 조사결과 청동기~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상·하 중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주거지 200동, 고상식 건물지 4동, 수혈, 구 등 648기의 유구가 확인됨
 -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원형, 말각 방형의 송국리식 주거지이고, 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, 수혈, 구 등으로 중복 및 중첩 조성되었으나 배치 양상으로 보아 유적의 중심 지역은 북쪽으로 이어진 구릉 말단부로 보임
 - 수혈의 평면 형태는 원형, 방형, 부정형 등 다양하며 주거지와 동일하게 중복 및 중첩양상을 보임
 - 구(溝)는 ‘ㄴ’자상으로 이어지는 4호 구가 특징적인데 구 내측에 주거지들이 집중 분포하고 외측에 수혈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락을 구획 및 경계하는 환호 또는 환구로 추정됨

(6) 학술자문회의(2015. 7. 16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화재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락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, 취락 상황 배치도, 구와 주거지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도록 함
- 발굴조사 종료시점에 전문가검토회의를 실시, 유적보존과 의의를 검토하도록 함

라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8. 25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청동기시대~삼국시대 취락유적으로 삼국시대 취락은 중형이상 주거지로 구성된 대규모 취락이며, 팔각건물지가 확인되는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임
- 유적이 가지는 학술적, 역사적 의미가 크므로 유적의 보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-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8. 25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 - 평가 평점 : 88.51점

마. 사업시행자 의견(한국도로공사)

- 유적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

(1안)

- 복토 원형보존(토공 성토)
 - 유구 내 유입된 퇴적물 및 불순물 제거 → 부직포 설치 → 보호재(양질의 마사토)로 유구 채움 → 마사토 복토(1m) → 성토(15m/조사기관 입회하에 추진)
 - 문화재 훼손 없이 보존조치(18,084m²)
- 유적 안내판을 설치하여 발굴성과 및 학술적 가치 홍보

(2안)

- 교량설치 원형보존(교량하부 노출)
 - 교량 (L 210m, H 16.95m, 경간장 80m)
 - 교량 기초 터파기 및 가도, 축도 등으로 문화재 훼손 불가피(8,814m², 유구 341기)
 - 교량 하부공간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노출 보존 시 침수·토사·풍화 등으로 유적 훼손
- 교량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재협의(118억원) 및 설계기간 장기(14개월) 소요

바. 의결사항

- 부결
 - 다른 보존방안을 제출 받아 재검토
- 부결 7명 / 출석 7명

17.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

가. 부의사항

「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」 표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부의사유

- 동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부실 여부 판단
 -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이 동 사업부지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(재)가경고고학연구소가 보완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됨
 - 표본조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표본조사 부실 여부 검토
-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<별표4>에 의거한 ‘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기준’ 검토

다. 사업개요

- (1) 사업명 :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
- (2) 사업지역 :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리, 북수리 일원
- (3) 사업면적 : 451,788㎡
- (4) 사업기간 : 2008~2025년
- (5) 시행자 : 아산시장

라. 조사개요

- (1) 조사면적 : 399,504㎡(시굴 112,776㎡, 표본 286,728㎡)
 - 시굴조사 : (재)가경고고학연구소(‘14. 12. 23.~)
 - 표본조사 :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(‘14. 12. 29.~’15. 2. 17. / 현장조사 18일)
- (2) 조사결과
 - 시굴조사 : 원삼국시대 주거지, 토광묘, 경작층, 수혈유구 등 유구와 유물 확인
 - 표본조사 : 조사구역 I-③, I-④구역은 유적과 관련된 유구·유물 없음

마. 처리경과

- 2009. 4. 28.~2009. 5. 27. 문화재 지표조사((재)백제문화재단연구원)

- 조사결과
 - 유물산포지 5개소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실시, 지표상에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천변 일대의 안정적 축적지는 인근의 ‘아산 갈매리 유적’ 등 감안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4개소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실시 의견 제시
- 2009. 7. 20. 문화재청, 문화재보존대책 통보
- 2014. 12. 29.~2015. 2. 17. 문화재 표본조사(현장조사일수 18일)
 - 조사기관 :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
 - 조사결과
 - I-③, I-④구역은 유적과 관련한 유구·유물 없음
 - II-②구역은 선사~근대에 이르는 생활 및 분묘 유적 확인, 민묘 이장 이후 동사면 일대에 대한 추가적인 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
 - 학술자문회의(2015. 2. 4./ ○○○, ○○○)
 - II-②구역은 선사~근대에 이르는 생활 및 분묘 유적 판단
 - I-③, I-④구역은 유구·유물 확인되지 않음
- 2015. 2. 2.~2015. 2. 12. 문화재 시굴조사
 - 조사기관 : (재)가령고고학연구소
 - 조사결과
 - 1지점은 인근의 갈매리 유적과 유사한 원삼국~백제시대 경작유구와 수혈 등이 확인됨. 3·4지점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, 5·6지점은 백제~조선시대의 토광묘 등 유구가 확인됨
 - 학술자문회의(2015. 2. 10.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 - 1지점과 5지점은 발굴조사 필요. 6지점은 수습조사 후 3·4지점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도 무방함. 2지점과 1지점 일부는 지장물 철거 후 조사 실시
 - 1지점과 같은 지형인 표본조사 지점(백제고도문화재단)에는 유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굴조사를 재검토하여 기반층위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
- 2015. 3. 19. 문화재청, 표본조사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(○○○, ○○○)
 - 시굴조사 지역(가령고고학연구소)과 표본조사 지역(백제고도문화재단)의 조사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연결된 지점에 대해 트렌치를 관통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유존여부 판단
 - 양 기관의 상이한 조사결과는 표고 차이 및 토층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여겨짐
- 2015. 4. 2. 문화재청, 1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(‘바’항 참조)
 - 시굴조사 지역의 문화층과 연결되는 유구 잔존 가능 지역에 대한 추가 시굴 실시
 - 유구 잔존 가능부지는 시굴조사 완료 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발굴 전환 검토
- 2015. 4. 13. 문화재청, 시굴조사 1차 부분완료(가령고고학연구소)
 -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완료된 3, 4, 6지점에 대한 부분완료 조치(22,330m²)

- 2015. 6. 2. 문화재청, 시굴조사 변경허가(가경고고학연구소)
 -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실시한 표본조사 지역 중 유존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전환(23,950m²)
- 2015. 6. 24. 문화재청, 2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('바'항 참조)
 - 유구 경계를 찾기 위한 트렌치 조사를 연장하여 실시 조치
- 2015. 9. 4. 문화재청, 3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('바'항 참조)
 -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 추가 실시
- 2015. 9. 11. 문화재청, 4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('바'항 참조)
 - 시굴 전환지점에서 유구가 확인된 지역(5지점, I-③구역)은 발굴조사로 전환 조치

바. 전문가 검토의견

- 1차(2015. 4. 2. / ○○○, ○○○)
 - 표본조사 지역 Tr.2, 3, 5, 8을 연결하는 선 이북지점(12,620m²)은 시굴조사 대상지역의 문화층과 연결되어 유구의 잔존 가능성이 있음
- 2차(2015. 6. 24. / ○○○, ○○○)
 - 추가 시굴 경계지점에서 원삼국시대 유구들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유적의 동쪽과 남쪽으로 유구 확인을 위한 트렌치 연장조사 필요
- 3차(2015. 9. 4. / ○○○, ○○○)
 - 기 표본조사 지점에서 시굴트렌치 조사를 확대한 결과, 전 지점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조사지역 전체를 유적범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
 - 이 경우 정확한 범위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
 - 선행 표본조사와 관련,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검토과정에 비추어 고의성을 지적하기 어려움
- 4차(2015. 9. 11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 - 5지점과 보완 시굴조사 구역(I-③구역)은 발굴조사로 전환할 것
 -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의 표본조사 방법에서의 고의적 부실조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

사. 표본조사기관 의견((재)백제고도문화재단)

- 1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
 - 당초 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1월 중으로 대상지 일대 표토층이 대부분 동결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굴착하는 과정에서 경작층 하부의 문화층이 불가피하게 과다 제토됨에 따라 문화층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
 - 사전 조사를 통해 인근의 '아산 갈매리 유적'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적의 잔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굴착과정에서 유물 및 유적의 잔존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고 원 지반까지 제토함

- 저습지에 해당하는 자연지형상 굴착을 하자마자 지하수가 분출되는 상황임. 조사기간이 짧고 면적이 넓은 표본조사의 한계로 인해 각각의 트렌치마다 양수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배수를 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었음
- 조사 결과, 근현대의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지형을 고대에 투사하여 I-③구역 일대가 오목한 곡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이 일대가 배후습지로 근세 이전의 유적 및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

○ 2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

- 근세 경작층과 조사대상지 서쪽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유구 및 유물을 발견하지 못함
- 서쪽 가장자리에서 원삼국시대 생활면과 기반층이 잔존하였으나 동쪽으로 가면서 후대의 모래퇴적층 형성에 따라 사라지는 양상을 확인함

○ 3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

- 조사 초기에는 삼교천을 비롯한 소하천과 그 주변의 자연제방 사이의 배후습지로 판단함. 그러나 가경고고학연구소의 추가조사 결과 고대에는 볼록한 지형에 해당함을 재인식하게 됨
- 본 기관이 지형 분석의 실수로 인해 이 일대의 층위 및 형성과정의 해석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조사기관의 의견을 번복하여 이 일대 70,860㎡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
- 추가조사 범위는 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추가 시굴조사 결과와 고지형 재해석에 따른 자연지형을 근거로 함

아. 검토의견

○ 위 사항과 관련, 본 위원회에서 검토할 (재)백제고도문화재단의 책임문제

- ① 해당 지역(I-③)에 대한 표본조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
- ② 동일 지역 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
- ③ 당초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지역이 정밀발굴로 전환하게 된 책임문제

○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

<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>

-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)
 “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”
- 4.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- 동 시행령 제27조(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) 제1항
 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”
-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별표4)

II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처분기준
1.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4호	·1차 위반: 1년 ·2차 이상 위반: 2년
2.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4호	·1차 위반: 경고 ·2차 위반: 1년 ·3차 이상 위반: 2년

자. 의결사항

- 보류
 - 심도있는 검토 후 재검토
- 보류 7명 / 출석 7명

II. 검토사항

1.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) 발굴유적 보존방안 검토

가. 제안사항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)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)의 발굴 및 전문가 검토회의(2011. 12. 14. / 2015. 9. 10.) 결과에 따라, 발굴완료 후 평가가 유보된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고자 함

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/ 발굴(761㎡)
- (3) 발굴기관 : (재)제주문화유산연구원
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)
- (4) 발굴기간 : 2011. 7. 11.~12. 23.(실조사일수 100일)
- (5) 조사결과(Ⅱ구역)
 -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2기 및 수혈유구 6기 등

라. 전문가 검토회의(2011. 12. 14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동 유적은 기원전후 시기 취락유적의 일부분으로 판단됨
- 발굴결과, 확인된 중요지점에 대한 보존 및 미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함
 - Ⅲ-1구역은 현지보존하고, Ⅱ구역 중 송국리형주거지 밀집지역은 주변 미조사지역 조사 후 종합적 판단 필요

마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9. 10. / ○○○, ○○○)

- 2011년 12월 전문가 검토회의 당시,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2구역)에 서는 원형주거지 12기 및 수혈유구 6기 등이 확인되어 연결한 도로구간의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평가가 유보된 구간임

- 최근 이루어진 Ⅱ구역 주변 일부 도로구간의 발굴결과(2·3지점 등)와 지난 2011년에 실시되었던 Ⅱ구역 주변의 발굴결과를 참고할 때,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)은 기록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(○○○)
- 당시 유보지역에 인접한 제한구역은 아직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, 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 완료 후 판단해야 함(○○○)

바. 사업시행자 의견(제주도청)

-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우회도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, 관광미항 내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착공(2014. 6월) 후 중단된 상태임
-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2011년 12월 발굴완료 후 평가를 유보한 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(Ⅱ구역, 761㎡)”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
- 크루즈터미널 공사는 관광미항 내 중요한 기반시설로서, 조속한 공사 착공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발굴완료 후 평가가 유보된 Ⅱ구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

사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 - Ⅱ구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 구역은 기록보존 후 사업시행 무방
- 원안가결 7명 / 출석 7명

Ⅲ. 보고사항

1. 전국 목장성 기초학술조사 실시보고

가. 보고사항

목장성 종합보존방안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목장성 문헌 및 현황조사 등 기초학술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드립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평택 홍원곶 목장성 보존방안 검토를 통해 제시된 전국목장성 보호·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실시

다. 조사용역 개요

- (1) 조사기간 : 2015. 9.~2015. 12.(착수일로부터 122일)
- (2) 조사대상 : 전국 소재 목장성(남한 한정)
- (3) 사업비 : 27,000천원
- (4) 조사기관 :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
- (5) 조사방법 및 내용
 - 문헌조사
 - 조선전기 :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, 『목장지도』
 - 조선후기 : 『여지도서』, 『증보문헌비고』
 - 현지조사
 - 지역별 대표 목장성 3개소 선정, 현지조사 실시
 - 목장성 시대별 운영실태 및 규모 파악
- (6) 기대효과
 - 목장성 변천상황 제시 및 향후 정밀 현지조사 대상 목장성 선정·조사계획 수립
 - 이를 통한 종합보존관리 기본자료 활용

라. 참고사항

- 목장성 관련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회의 심의('14. 11. 21)결과
 - 전체 목장성의 보호·보존방안을 검토하고, 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것

마. 의결사항

- 원안접수
- 원안접수 7명 / 출석 7명

2.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

가. 보고사항

「문화재보호법」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국가 또는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 사항 중 조사기관 변경이 없는 연차발굴조사와 7일 이내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.

※ 2014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요청사항

다. 유적목록

문화재명 (유적명)	지정현황	신청사유	조사기관	면적 (㎡)	조사 유형	조사 기간	허가 일
광주 조선백자 요지 4차 발굴	사적 제314호	학술발굴조사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	(재)경기도 도자박물관	33,172	시굴	80	9.4.

마. 의결사항

- 원안접수
- 원안접수 7명 / 출석 7명